고용노동부	보 도 자 료		휴먼뉴딜 한국판뉴딜
보도 일시	2022. 2. 22.(화) 12:00 2022. 2. 23.(수) 조간	배포 일시	2022. 2. 22.(화) 12:00
담당 부서	노동시장정책관 코로나19고용회복지원반	책임자	과 장 박병기 (044-202-7292)
		담당자	사무관 배지연 (044-202-7229)

고용유지지원금, 대규모기업도 3년 연속 계속 지원

- 대규모기업 지원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구체화 -

□ **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**은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여전히 **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차에도 계속 지원**하겠다고 밝혔다.

○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*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같은 달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반복적 지원이 제한되나,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.

* 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) (..전략) **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**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**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**하고는 **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**

□ 고용노동부는 **지난해 12월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** 판단기준을 지방관서에 시달한 바 있다.

<판단기준>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(매출액 15% 이상 감소 등)을 충족하는 기업 대상

① (중소기업)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피성 인정

② **(대규모기업)** 매출액, 영업이익 등 **경영여건을 종합 검토**하여 지원 불가피성 판단

* 대규모기업: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(별표1),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을 의미

□ 이번에 지방관서와의 간담회('22.2.17.) 등을 거쳐 시달된(2.22.) 추가 기준은 **대규모기업의 경영 여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**한 것으로

○ **'21년 실적이 적자**이거나, **'21년 실적이 흑자인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이 적자**인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.

> **< 대규모 기업 대상 판단기준 >**
> ▲기업별 매출액 15%이상 감소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규모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
> **가. '21년 실적이 적자인 기업에 대해 지원의 불가피성을 인정**
> **나. '21년 실적이 흑자인 기업이나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 지원의 불가피성을 인정**
> **다. '20년, '21년 연속하여 흑자인 기업은 지원의 불가피성을 불인정**

□ 이에 따라 **3년 연속 지원 제한 규정에도 불구**하고 **대다수의 대규모 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**이다.

○ 지원을 희망하는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와 함께 경영 여건에 대한 자료를 담은 '3년 이상 계속지원 검토요청서'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.

□ **안경덕 장관**은 "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라며, **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**하겠다"라고 밝혔다.

2021 정부혁신 우수기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